

대전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단1403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종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1. 속초시 D 대 73㎡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7. 7.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2021. 2. 16. 접수 제2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원고에 대하여 2021. 11. 3. 기준 90,907,869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차8944호로 확정된 지급명령 및 같은 법원 2009가소185595호로 확정된 판결).

나. 한편, E의 아버지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와 자녀들인 피고, E, H가 있었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7. 28.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2021. 2. 1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이 존재하여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E이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이 망인 생전에 이 사건 토지 중 E의 상속지분가액을 초과하는 사업자금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이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 중 E의 상속지분이 없고, 이 사건 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E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